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 91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완화
- 주요 관광지 단체할인 인원(20명 이상)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고 학급단위의 소규모 수학여행 증가에 따른 단체관광객 보상금 지급 기준 완화로,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으로서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 신설
 - 공동취사장을 갖춘 경우 총객실 30%이하는 객실내 취사시설 미구비 허용
- 내·외국인, 수학여행·학생단체 등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 내국인 1회 25명 이상 ⇨ 20명 이상
 - 외국인 1회 10명 이상 ⇨ 5명 이상
 -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5명 이상 ⇨ 20명 이상
 - 농촌체험 외국인 1회 10명 이상 ⇨ 5명 이상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16.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휴양콘도미니엄”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 고
내국인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 ·대학생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휴양콘도미니엄”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u><신설></u>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u>제18조 · 제19조</u> (생략)	<u>제19조 · 제20조</u>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u>제20조 ~ 제22조</u> (생략)	<u>제21조 ~ 제23조</u>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u>제23조 · 제24조</u> (생략)	<u>제24조 · 제25조</u>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u>제25조 ~ 제30조</u> (생략)	<u>제26조 ~ 제31조</u> (현행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u>제31조</u> (생략)	<u>제32조</u> (현행 제31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고	구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고
내국인	<u>1회 25명 이상</u>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내국인	<u>1회 20명 이상</u>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u>1회 10명 이상</u>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외국인	<u>1회 5명 이상</u>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u>1회 25명 이상</u>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 대학생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u>1회 20명 이상</u>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 대학생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 중복시 하나만 지원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u>외국인</u> <u>1회 10명 이상</u>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u>외국인</u> <u>1회 5명 이상</u>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